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3

발의연월일: 2024. 7. 31.

발 의 자:최수진・임이자・김예지

강선영 • 인요한 • 조정훈

김선교 • 박준태 • 김장겸

김상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수산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출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구개발사업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의 예산은 증액이 어려운 상황일 뿐 아니라, 정부가지급하는 출연금은 자금 활용 시기에 있어 탄력성이 부족하므로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하여 출연 위주의 연구개발지원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연구개발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고 기술개발을 촉 진하여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등).

법률 제 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원"을 "지원 또는 융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위"를 "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융자금의 지급·상환 방법"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제8조(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연구개발	②
사업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출	
연금을 지급하거나 필요한 비	
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u> 할 수 있다.	<u>지원 또는 융자</u>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3
등의 추진, 제2항에 따른 출연	
금의 지급 및 비용의 지원 범	지급과 비용의 지원 범
<u>위</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위 및 융자금의 지급・상환 방
령으로 정한다.	법